# 학생 의료공제회 규정

제정 1989. 03. 01. 제7차 개정 2022. 04. 20.

## 제1장 총칙

**제1조(목적)** 이 회는 상지대학교 학생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진료를 받는 경우에 적절한 진료비를 지급하여 학생들의 건강유지와 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명칭) 이 회는 상지대학교 학생 의료공제회라 칭한다.

**제3조(담당부서)** 이 회의 제반 업무는 <mark>학생취업지원처</mark>에서 주관한다. (개정 2012.5.4., 2022.04.20)

제4조(용어의 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- 1. 공제회비라 함은 학생의료비 보전을 위해 신입생 등록시에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.
- 2. 학생이라 함은 당해 학기 등록을 마친 상지대학교 학생을 말한다.
- 3. 질병 또는 부상의 진료라 함은 의료기관 의사의 진단에 의하여 행하여진 치료행위를 말한다.
- 4. 공상이라 함은 그 직접적인 원인이 총장 및 학장이 승인한 공식적인 행사에서 발생한 경우를 말하며 학교의 영조물에 의한 경우도 포함된다.
- 5. 일반진료라 함은 공상의 경우를 제외한 진료를 말한다.

**제5조(수혜대상자)** 수혜대상자는 상지대학교 재학생으로 한하며 휴학자는 수혜대상자에서 제외된다. (개정 2012.05.4)

## 제2장 운영위원회

**제6조(운영위원회의 설치)** 공제회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두다.

제7조(임원) 위원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.

위원장-1인, 부위원장-1인, 위원-약간인, 감사-1인, 간사-1인.

**제8조(위원의 선임)** 위원장은 학생취업지원처장으로 하며, 위원 및 감사는 위원장의 제청으로 본 대학교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며 간사는 학생지원팀장으로 한다. (개정 2002.7.31., 2012.5.4., 2022.04.20)

제9조(위원회의 임무)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.

- 1. 공제회 운영의 기본 방침 수립
- 2. 예산 및 결산심의
- 3. 규정의 개정
- 4. 기타 이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

제10조(회의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.

-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③ 감사는 업무전반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.
- ④ 간사는 의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처리한다.

## 제3장 공제비 급여

- **제11조(공제비 지급기준)** 공제비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, 1년 단위로 지급한다. (개정 2008.3.31)
  - 1. 공상진료 : 공상 치료에 의한 진료비가 학교경영자 배상보험 및 단체상해보험 치료비 지원 액을 초과하는 경우 2.000.000원 범위내에서 진료비를 지원한다.
  - 2. 일반진료 :
    - 가. 학교 보건소에서 일반진료로 인한 치료비는 전액 지원한다.
    - 나. 학교 보건소 이외의 일반진료비는 50%까지 지급하되, 입원의 경우에는 300,000원의 범위내에서, 통원의 경우에는 200,000원의 범위내에서 지급한다.
  - 3. 공상으로 인한 사망 이외의 일반 사망자에 한해서는 3.000.000원을 지급한다.
  - 4. 안경, 보철기구 및 치과의 귀금속 보철대는 진료비에 산입하지 않는다.
- 제12조(공제비의 범위 및 지급) ① 전조의 진료비의 범위는 질병 또는 부상의 진료에 따르는 약 값(단, 한약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한방기준 처방에 한한다. 검사료, 입원료(2등 또는 2인용 이하의 입원실을 기준으로 하며 식대를 포함한다), 침구, 부황요법 및 기타의 진료수술비에 한한다. 다만, 진료에 소요되는 수수료, 증명료는 포함되지 아니한다. (개정 2012.5.4.)
  - ② 학생 의료공제회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질환에 대하여 잔여 공제회비 소멸 시 까지 상지 대학교 재학생에게 지급할 수 있다. (항 신설 2012.5.4)
- 제13조(공제비 급여제한) 다음의 경우에는 공제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 (개정 2008.3.31)
  - 1. 진료비 총액이 10,000원 미만일 경우, 다만, 학교 보건소에서 일반진료로 인한 치료비는 예외로 한다.
  - 2. 동일 학생에 대한 공제비 급여가 지급기준에 의한 진료비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
  - 3. 선천적 질환이나 성형등의 진료
  - 4. 교통사고 및 폭력, 상해등 심사위원회에서 지급이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학생지원처장이 승인하는 경우
  - 5. 기타 학생지원처장이 인정치 않은 집회에 참가했을 경우
- **제14조(공제비 급여 신청)** ① 공제비 급여를 받고자 하는 학생은 학생 의료공제비 청구서(<u>별지 서식 제1호</u>),공상 확인서(<u>별지 서식 제2호</u>),진료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(<u>별지서식 제3호</u>)와 진료비 영수증을 첨부하여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 (개정 2022.04.20)
  - ② 공제비 신청은 치료 완료 후 해당 학기 내에 하여야 한다. (개정 2002.7.31)

### 제4장 자산과 회계

제15조(재원) 공제회는 다음의 수익금을 재원으로 한다.

- 1. 공제회비
- 2. 학교의 보조금
- 3. 기타 수입금

제16조(공제회비의 책정) 공제회비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이 정한다.

제17조(회계년도) 공제회의 회계년도는 본 대학교 학년도와 같다.

- **제18조(예산과 결산)** ① 위원장은 매 회계년도 개시 전에 세입, 세출예산을 편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  - ② 위원장은 매 회계년도 경과 후 즉시 세입세출에 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제19조(자금의 예탁) 공제회의 모든 자금은 금융기관에 예탁하여야 한다.

제20조(수당지급) 공제회를 운영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21조(회계기관) 학생의료 공제회의 회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"학생의료 공제회 회계"에 "계약관", "출납관"을 두며, 계약관은 학생취업지원처장이 되고 출납관은 학생지원팀장이 된다.

(개정 2012.5.4. 2022.04.20)

## 제5장 해산

(신설 2008.3.31)

제22조(운영종결) 학생의료공제회비 소멸시까지 공제회를 운영하는 것으로 한다.

- **제23조(해산)** 공제회의 운영이 불가능하여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공제회 운영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최종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**제24조(재산귀속)** 공제회가 해산될 경우 잔여재산은 본교에 귀속된다. 다만 공제회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사업의 경우 공제회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있다.

#### 부칙

이 규정은 198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친

- (1) (시행일) 이 규정은 1994년 6월 7일부터 시행한다.
- (2) (경과조치) 1995학년도 이전에 입학생은 매학기 등록시에 공제회비를 납부하며, 학기 중 휴학생의 경우에는 복학한 학기에 수혜대상자가 된다.

#### 부칙

이 규정은 1997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칙

이 규정은 2002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브치

이 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칙** (기획예산과-438호, 2008.4.1)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8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경과조치) 2009학년도 신입생부터 학생의료공제회비를 징수하지 않는다.
- ③ (적용시점) 제11조(공제비지급기준)에 의한 공제비 지급은 2008학년도까지 입학한 학생중 의료공제회비를 납부한 학생에 한하여 지급한다. 단, 학교 보건소에 의한 진료비는 전체학생에게지원한다.

**부칙** (기획예산부-657, 2012.5.4)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.

## **부칙** (기획예산팀-257, 2022.04.20.)

이 규정은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별지 제 1호 서식

## 학생의료공제비 청구서 및 심사의견서

제	至	_					
	소속학과장			계	주임	과장	처장
경			결  -11				
유			재				

학생의료공제회 규정 제14조에 의거 학생의료공제비를 청구합니다.

년 월 일

청 구 인 (인)

진 료 자	대학	학과	학년	학번 :		
[ 신 됴 사	성 명		Ą	생년월일		
	병 원 명		Ħ	형 명		
	치료기관	입원: 일7		റി ല	r) 0)	در اسا حا
의 료 기 관		통원: 일긴		일부		
			월	일부	터 월 	일까지
	치료비 총액					
병 발생경위						
심 사 의 견	지급여부	가, 부, 보류	지급규정	학생의	료공제회 규정	조 항
	지 급 액		한 도 액			

## 별지 제2호서식 (개정 2022.04.20)

		공	상	확	인	서	
대 학:							
학 과:			학	년 :			
학 번:							
성 명:							
병 발생경위	:						
지도교수(확	인자) 직	<del>고</del> :		명:		(인)	
학생취업	지원처장	귀하					

## 별지 제 3호 서식

의 사 소 젼 서 (확인서)								
환자주소								
환 자 성 명		성 별		생년월일				
학 과		학 년		학 번				
병 명 -임 상 적 -최 종 적								
발 병 일								
발병 원인 및 치료 의견								
비 고								
위와 같이 소견 확인함.								
병・의원	년 월 일 병·의원명: 병·의원 주소: 면허번호:							
	의시	<b>사 성명</b> :		(인)				